의 안 번 호

1962

【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2. 7. 11.(월)

O 제 출 자 : 중구청장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7. 11.(월)

○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7. 29.(금)

2. 제안이유

○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이 신설 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정(안 제8조)
 - 해체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지하차도 출입구,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
 -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
- O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

O 「건축물관리법」제30조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인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하가 대상의 규정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개정조례안임.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「 건축물관리법 」

[시행 2021. 12. 30.] [법률 제17799호, 2020. 12. 29., 타법개정]

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이 장에서 "허가권자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〈개정 2020. 4. 7.〉

-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
- 2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
 - 가.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
 - 나.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
 - 다.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<개정 2022. 2. 3.>
- 1.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횡 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
- 2.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
- 3.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,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2. 3.〉